

##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

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 요약

난임 부부의 증가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조생식술, 특히 제3자의 정자·난자 및 대리모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상 유사거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생식세포의 매매 및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른 현행 법의 한계 및 관리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한 모니터링 사업은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거래 관련 글을 캡처 후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각 포털사이트 담당자 및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모니터링 시행 결과 불법적인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행위에 관한 위반내역은 2012년 총 2,025건에서 2015년 748건으로 확인되어 모니터링 후 한 달에 약 4건씩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는 특히 개별 대리부·대리모 지원 또는 의뢰하는 글의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물의 특성상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 및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류가 어렵고 근거 법령의 미비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체외수정이 아닌 인공수정을 이용하여 시술을 진행하거나 생식세포를 제공하지 않는 임신 대리모의 경우 관련 법률이 부재하여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도 정비를 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색인어

생식세포, 보조생식술, 대리모, 대리부, 온라인 모니터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교신저자: 김명희,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Tel: 02-737-8950, Fax: 02-737-8940, e-mail: rosamhk@hanmail.net

\* 이 논문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금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 배아정책팀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및 의인문학교실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 I. 서론: 불법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금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의 배경

난임<sup>1)</sup> 부부의 증가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조생식술<sup>2)</sup>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우자간 보조생식이 불가능한 난임 환자 중 비 배우자간 생식세포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의 시행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진행된 체외수정 건수는 33,214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48,238건으로 증가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배우자 난자를 사용한 건수는 386건, 비배우자 정자를 사용한 건수는 565건, 비배우자 난자·정자를 사용한 건수는 332건으로 확인되었다[1]. 국내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공여 정자 및 공여 난자를 이용하여 임신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금전, 재산상의 이익 및 그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어나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불법이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제6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2005년 9월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의원이 난자 매매 알선 광고 문구에 대한 근절방안을 요구하면서 국내에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행위가 존재

한다는 것이 공론화 되었으며<sup>4)</sup> 그 후로 생식세포 매매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6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3].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 후인 2010년 10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정하균 의원이 자체조사로 7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 부부 등 의뢰자와 난자 제공자 및 대리모 지원자들이 브로커 또는 개별적인 통로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sup>5)</sup> 김금래 의원이 대리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sup>6)</sup> 이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특히 대리부는 일부에서 인공수정뿐 아니라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요구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로 거론되었다.<sup>7)</sup>

이처럼 생식세포 불법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생식세포 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게재된 글을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sup>8)</sup> 이에 따라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불법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금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이하 불법 생식세포 모니터링 사업)’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생식세포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게시글을 모니터링 하기 시작하였으

1) 「모자보건법(일부개정 2015.12.22.)」 제2조 정의에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정의됨.

2) 「모자보건법」 제2조에서는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정의하고 있음.

3) 「생명윤리법」 제24조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 각 기증자 및 해당 기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27조에는 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127362>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1004000208&md=20101004092732\\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1004000208&md=20101004092732_BL)

6)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02208190377521&outlink=1>

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910073208897>

8)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8457>

며 현재까지 상시적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온라인에서 주로 논의되는 대리모 및 대리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생식세포 매매 관련 실태와 그 관계 법령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온라인에서 거론되는 대리모 및 대리부 개념

### 1. 대리모

이전부터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대리모에 대한 개념은 크게 임신 대리모(Gestational surrogacy)와 유전적 대리모(Genetic surrogacy)로 나누어 질 수 있다[4]. 임신 대리모는 의뢰부부의 배우자간 생식세포를 가지고 체외수정을 통하여 제3자인 대리모에게 이식하는 형태로, 대리모 본인과는 유전적으로 무관한 자를 출산하는 방식이다. 유전적 대리모란 의뢰 남성의 정자와 대리모의 난자를 체외수정 혹은 인공수정으로 시술한 뒤 출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은 대리모가 아이를 직접 출산한 어머니이며 유전적으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대리모는 대리출산에 따르는 대가측면에 따라서 이타적 대리모(Altruistic surrogacy)와 상업적 대리모(Commercial surrogacy)로 분류할 수 있다. 이타적 대리모는 반대급부 없이 난자를 제공하고 태아를 임신·출산하는 대리모를 말하며 상업적 대리모란 난자를 제공하거나 태아를 임신·출산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대리모를 말한다[5]. 그 외에도 대리출산에 사용되는 생식세포 제공 관계에 따라 대리모의 형태는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대리모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며, 관련 지침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과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 있다[6,7].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서는 의사가 인공수정에 필요한 생식세포의 매매 등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6]. 대리모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당 지침에서는 대리모(Gestational surrogacy)를 통한 임신을 부부간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형성된 배아를 타인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술 시 대리모로부터 유전적 부모와 금전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7].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국내에서 발의되었던 3건의 안에서는 대리모의 정의에 대하여 다양한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8-10]. 2006년 4월 발의된 박재완 의원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리출산을 배우자끼리 생식세포를 체외수정 시술하여 생성된 배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주입하여 출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대리모는 대리출산을 하는 여성으로 정의하였다[8]. 그에 반하여 2006년 10월 발의된 양승조 의원의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대리모를 자신이 임신하여 출산한 자를 타인의 자로 할 것을 계약한 여성으로 정의하였으며[9] 2012년 이영애 의원의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조생식을 이용하여 임신·출산을 한 후 그 자녀를 의뢰한 사람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임신·출산하는 여성으로 정의하였다[10]. 박재완 의원 발의안에서는 대리모를

앞선 지침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난임 부부에 한하여 영리목적 대리출산이 아닌 임신 대리모로 정의한 반면 양승조 의원과 이영애 의원의 발의안은 대리모 이용 행위 및 중개, 알선행위를 금지하면서 대리모에 대한 정의에 임신 대리모, 유전적 대리모를 포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리모에 대한 정의는 임신 대리모, 유전적 대리모, 이타적 대리모 상업적 대리모 또는 위 개념의 혼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리모 시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주로 난임 부부에 한하여 시행되는 이타적 임신 대리모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리모 시술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리모를 이 개념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를 함께 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대리모를 금전적인 목적이나 혹은 출생자와의 유전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임신·출산을 한 후 그 자녀를 의뢰한 사람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임신·출산하는 모든 여성으로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온라인에서 진행한 4년간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온라인 특성상 제한된 게시글 내의 정보만으로는 이타적, 상업적, 임신, 유전적 대리모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대리부

다음으로 대리부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조생식술에서 타인에게 정자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자 기증자(Sperm donor)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대리부라는 용어는 정자 기증자

와는 달리 김금래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성들의 용돈별이 수단으로 대리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대중매체 등에서 자극적인 소재로 등장하며<sup>9)</sup> 대중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온라인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대리모 개념의 경우 그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 대리부 개념은 현재까지 관련 지침 및 법안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불법 생식세포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에 온라인의 개념을 그대로<sup>10)</sup>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리부’라는 용어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대리부를 방식 및 목적에 대한 구분 없이 정자은행 체계가 아닌 음성적인 경로를 통하여 비 배우자인 제3자가 정자를 제공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 III. 불법 생식세포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 결과

### 1. 온라인 모니터링 방법

온라인 모니터링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는 불법 거래관련 글을 캡처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보고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먼저 해당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하였다. 방송통신위

9)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120808081001](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120808081001)

10)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대리부 관련 글의 경우 대리모 지원과는 달리 대부분 금전적인 동기와 자신의 학력, 신체, 직업 등을 직접적으로 밝히며 대리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수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 없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고 싶은 욕구 및 성적 욕구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함.

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포털사이트 담당자 및 카페 담당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다. 만약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1].

## 2. 온라인상 위반내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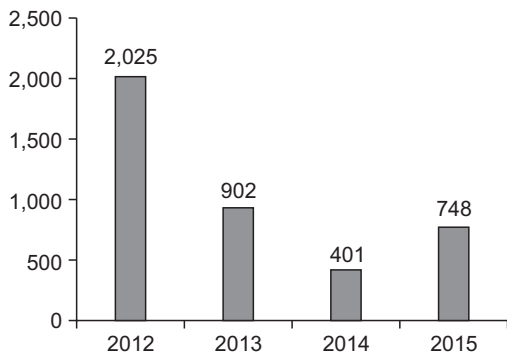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요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불법생식세포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 결과<sup>11)</sup>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면서 온라인상 위반내역의 수는 감소하였다<Figure 1>.

불법 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위반내역은 2012년에 총 2,025건, 2013년 902건, 2014년 401건, 2015년에는 748건으로 총 4,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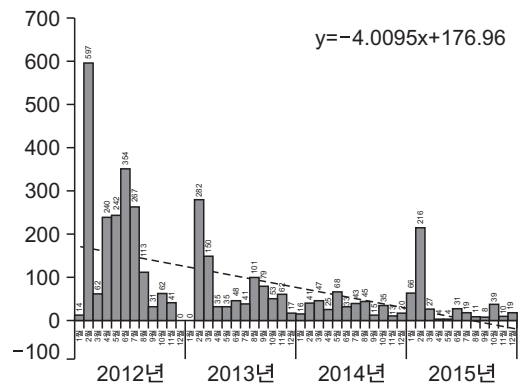
건이 파악되었다.<sup>12)</sup> 월별 자료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2년 1월 이후 한 달에 약 4건씩 위반내역 수가 감소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igure 2>, 이는 상시 모니터링이 실제 불법생식세포 거래와 관련된 글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 포털사이트 별 위반내역 현황으로는 4년간 다음 사이트가 2,116건(51.9%), 네이버 사이트가 1,866건(45.8%)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글 사이트가 44건(1.1%), EZDAY 사이트가 42건(1.0%)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포털사이트 내역<Figure 3>을 보면 모니터링 도입 후 해가 지날수록 위반내역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 네이버 사이트의 경우 위반내역이 418건으로 전년도 98건에 비하여 약 4배가 증가하였다. 증가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새로 추가된 남자매매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대리모 지원·의뢰가 2014년 26건에서 2015년 131건으로 증가하였고, 대리부 및 대리모 지원·의뢰 항목

<Figure 1> 2012-2015년 불법생식세포 모니터링 연도별 위반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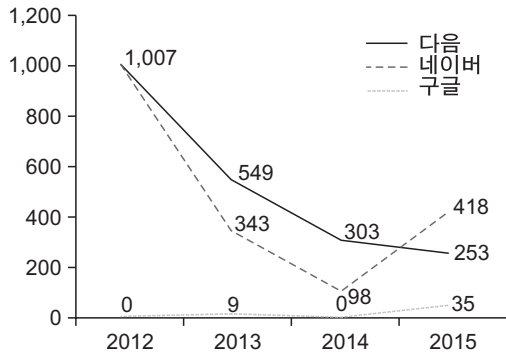
<Figure 2> 2012-2015년 불법생식세포 모니터링 월별 위반내역 회귀분석 결과.



11) 이는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파악된 건수로 온라인의 특성상 금전상의 이익 또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몇 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명확히 아는데 한계가 있음. 또 위반내역수의 변화는 온라인에 게시되는 글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불법생식세포 거래량의 변화와는 관련 없음.

12) 2015년에 위반내역이 증가한 이유는, 2014년까지는 금전적인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남자공여에 관한 게시글을 모니터링에 포함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할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연락처만을 기재하는 형태 등)을 새롭게 모니터링에 포함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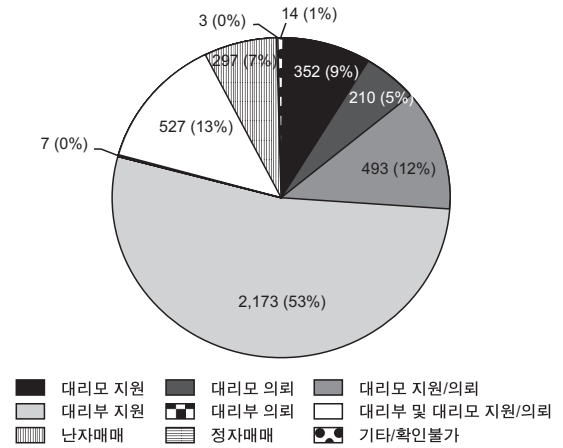
<Figure 3> 2012-2015년 포털사이트별 위반내역 현황 (다음, 네이버, 구글).



도 2014년 0건에서 2015년 2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가 지속적으로 가해지자 자체 개설 사이트 혹은 브로커와 연결하여 대리모·대리부, 의뢰자·지원자 모두를 모집하는 형태로 게시글 내용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3)</sup>

또 불법 생식세포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일관되게 포털사이트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국내 포털사이트 내 위반내역 감소 효과와 더불어 사이트 별로 자체적인 제한조치를 마련하여 규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 사이트의 경우 2014년도까지는 남자매매, 정자매매, 난자공여 등에 대한 카페 내 금칙어를 지정하여 검색결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불법소지가 있는 게시글이 주로 올라오는 경우 블라인드제도를 도입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 사이트의 경우 대리부·대리모를 주 목적으로 개설된 카페에 대하여 접근제한조치를 초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체적인 규제는 한계가 존재하지만<sup>14)</sup>

<Figure 4> 2012-2015년 위반내역 총합계.



관련 키워드로 접근하는 일반 대중에게 생식세포를 매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 3. 생식세포 거래관련 불법 행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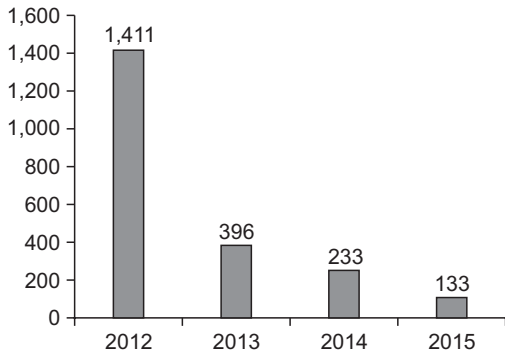
불법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에 관한 위반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이 생식세포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로 주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카페에 본인의 신상 정보를 올리는 게시글 형태와 카페 담당자의 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 카페 및 블로그를 개설하는 방법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개별 대리부 지원, 대리모 의뢰 등에서 볼 수 있다. 개별 지원자의 경우 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가장 큰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일례로 대리부 지원 관련 위반내역은 4년 간 2,173건이 발견되어 총 위반내역의 53%로 <Figure 4> 다른 항목에 비하

13) 구글 사이트는 국내에 주 관리자가 없어 시정조치가 미비함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현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새로 시작하였다.

14) 다음의 금칙어는 단어를 약간 변형시킴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15) 실제 2012년도에는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일반인들의 글이 주로 대리모, 대리부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3년 이후에는 대리모, 대리부의 율고 그룹에 대해 논의하거나 불법임을 알리는 정보를 포함한 글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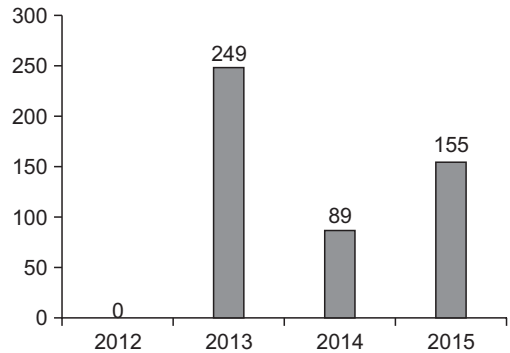
〈Figure 5〉 대리부 지원 연도별 위반내역 현황.



여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411건, 2013년 396건, 2014년 233건, 2015년 133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5>.

두 번째는 알선·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브로커가 홈페이지 주소 및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형태이다. 이는 주로 의뢰자와 지원자를 동시에 모집하는 형식으로 글이 게시되며 대부분의 글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동시에 대리모 지원·의뢰를 모집하는 위반 글의 경우 2012년도에는 0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249건, 2014년에는 89건, 2015년 155건으로 나타났다<Figure 6>. 이 경우의 문제는 자체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 카페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과 같은 제재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자체 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홈페이지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대리모 문제의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해당 법률이 아직 미비하여 개별 홈페이지 상에서 금전적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위법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들은 접근제한조치가 진행되

〈Figure 6〉 대리모 지원·의뢰 연도별 위반내역 현황.



지 못하였으며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 사이트만이 접근제한조치가 가능하였다.<sup>16)</sup> 일단 자체사이트로 접근하고 나면 이후 상담 내역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생식세포 거래에 대한 객관적 수치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온라인 모니터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V. 불법생식세포 매매 및 알선 금지에 관한 현행법의 한계 및 관리방안 제언

앞서 논의한 것처럼 대리모와 대리부 관련 행위 중 금전거래를 조건으로 배아나 생식세포를 제공·이용하거나 이를 유인·알선한 행위일 경우가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었다.<sup>17)</sup> 그러나 현재 「생명윤리법」 제23조 제3항의 법 조항만으로는 불법 생식세포 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을 가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목적으로 매매 혹은

16) 이는 착상 전 성별검사 및 유전자진단을 통해 성별선택이 100% 보장된다고 명시한 사이트였음. 이 경우 「생명윤리법」 제23조 제2항 제1조, 동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료법」 제20조에 따라 불법임.

17) 「생명윤리법」 제23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알선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온라인에 올라온 글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등으로 함축된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 안에 금전 거래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거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 현행 법규에 판단기준인 유상 혹은 무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3]. 실제 적용중인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에서는 난자 및 정자 공여에 대한 실비보상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12] 생식세포 수증자가 공여자를 직접 구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실비만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역시 필요하다.

둘째, 임신을 위해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기술이 아닌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생명윤리법」 상의 ‘배아생성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sup>18)</sup> 따라서 인공수정 기술에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여러 법적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가에서는 등록된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배아의 생성, 보존, 이용 현황 등 보조생식술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체외수정기술을 하는 곳이므로 인공수정기술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실태 파악 대상인 ‘배아생성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내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셋째, 배우자간 생식세포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임신 대리모의 경우는 본인의 생식세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윤리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까지는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에 임신 대리모의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대리모 행위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불법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대리모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부재하고, 다만 가족법<sup>20)</sup>에 따라 대리모 출생아동은 법적으로 대리모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계약법<sup>21)</sup>에 따라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본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13].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는 임신 대리모와 유전적 대리모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부 조사되었으나 추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대리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리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리부에 대한 문제는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임신 대리모와는 달리 유전적인 관계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한 알 권리 및 친권을 요구하거나 생물학적 자녀의 양육비 청구

18) 「생명윤리법」 제 22조에서는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의료기관을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하고 있음.  
 19) 다만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모자보건법」 제11조 3항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3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조건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후 현황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20) 모자관계의 추정에는 당연발생주의와 친생자 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 추정)에 의하여 유전학적 결합과 관계없이 임신하여 출산한 대리모가 법률상 어머니가 됨. 한림대학교, 보건복지부,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 방안 모색, 2005, 109p.  
 21)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음.

등의 법적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따라서 수증자 지정의 허용여부, 정자 공여자의 정보제공 및 보호 등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생식세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식세포 관련법 및 대리모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으며<sup>22)</sup> 상업적 대리모로 언론에서 문제가 된 태국<sup>23)</sup> 및 인도<sup>24)</sup>에서도 제한조치를 가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리부·대리모 행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실태 파악 및 수요 조사이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후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 윤리, 의학전문가뿐 아니라 난임 부부에 대한 목소리와 태어날 자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음성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던 대리모 및 대리부 행위 문제들을 다시 공적 토론의 장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상기 과정이 바탕이 된 후 궁극적으로는 생식세포 관리 및 대리출산 문제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온·오프라인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절차, 처벌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대리모 및 대리부 행위뿐 아니라 생식세포를 둘러싼 전반적인 행위를 아우르는 법률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온라인상 불법생식세포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매매·알선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교육과 생식세포 거래 및 자녀출산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상 불법생식세포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매매·알선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교육과 생식세포 거래 및 자녀출산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V. 맺는말

이 글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식세포의 거래 및 대리모·대리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생명과학의 발달에 따라 생식영역에서 보조생식술의 응용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영역이 아직 많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리모 및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법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나 뚜렷한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이를 음성적인 영역 안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온라인상에서 금전적인 목적을 위한 생식세포의 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이 과정으로 태어나는 아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자신의 권리와 신체를 침해 당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특히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자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직시하고 관련 전문가 및 국

22) IFES surveillance 2013에 따르면 대리모를 금지하는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이탈리아, 리비아, 핀란드, 독일 등이며 비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그리스, 영국 등이고 상업적 대리모까지 허용하는 경우는 미국,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등임.

23) 태국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출산,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되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30/0200000000AKR20150730064500076.HTML?input=1179m>

24) 인도에서는 「출산지원기술법」이라는 상업적 대리모 금지 법안이 의회 승인을 준비중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1124010014209>

민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당 절차를 상세하게 논의하여야 하며, 수용 가능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파악과 처벌 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단기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한데 다행히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시가 가능한 체계이다. 이와 같은 감시체계를 지속하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간 생식세포를 이용하여 임신에 이를 수 없는 난임 부부가 타인의 생식세포를 이용해서라도 자녀를 출산하고자 갈망하는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경우를 허용하는 것은 그 절차에 관여되는 의뢰자, 기증자, 대리모, 태어난 자의 신체 및 정신을 침해할 수 있기에 심도 깊은 논의·연구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충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때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㉞

## REFERENCES

- 1) 보건복지부. 2012년도 배아보관 및 제공현황 조사결과, 2013 : 6-8.
-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2844호, 일부개정 2015.12.29.) 제23조, 동법 제66조.
- 3) 황만성, 한동운, 신동일. 정자·난자 유상거래 금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4) 맹광호.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비교사법 2005 ; 12(2) : 74-78.
- 5) 서종희.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009 ; 23(3) : 52.
- 6)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제정·공포 2011.11.14.) 제56조.
- 7)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제정 2010.10.22.) VI 대리모 시술.
- 8)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6.4.28.) 제2조.
- 9)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발의 2006.10.19.) 제2조.
- 10) 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발의 2012.2.10.) 제2조.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7호, 제73조.
- 12) 보건복지부.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 안내. 2013 : 40.
- 13) 이인영, 전효숙, 김민경.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정책 방안 모색. 한림대학교, 2005 : 109.

## Online Monitoring about Illegal Surrogacy Arrangement on a Commercial Basis in Korea\*

MOON Hannah\*\*, PARK So-Youn\*\*\*, KIM Myung-Hee\*\*\*\*

### Abstract

In recent years surrogacy services in Korea, with increasing infertility as well as high qualit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ve emerged as serious problems. The Korea's Bioethics and Safety Act on surrogacy bans illegal acts that provide or use an embryo, ovum or spermatozoon for money or act as broker for providing or using them. Since 2012,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KoNIBP) performed online monitoring about these illegal acts by capturing the information and submitted the list of them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lete the posts. After the correction order, the number of illegal cases steadily declined from 2,025 illegal cases in 2012 to 748 cases in 2015 (decrease of nearly 4 cases per month). However, under current law, it is hard to regulate all improper behaviors from who seek or provide surrogacy services and this law is in dire need of reform. We call for legislation that regulates inappropriate surrogacy arrangement on a commercial basis. Furthermore, we also have an urgent need of social consensus involving parents, professionals and surrogate mother or father.

### Keywords

gamet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urrogate mother, surrogate father, online monitoring,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

\* This work was based on the report of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Department of Embryo Policy,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and Humanities,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Corresponding Author*